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탁기 등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로 정비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 등록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냉동제조시설 및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에 대한 오류 정정, 의미 명확화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국내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1항 제2호아목)

- 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해당되어 신규 설치 및 변경시마다 제조시설 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 지연 애로사항 제기

- 2)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가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의 적용을 받던 것을 특정설비로 적용받도록 하여 기술검토 및 검사 소요기간의 단축(25일) 및 소요비용(장비당 약 5억원) 절감 기대

나. 현행 조문에 인용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의2제2호)

다.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탁기에 적용되던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인원 완화(안 별표3)

- 1)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탁기의 규제 실증특례 추진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기존에 적용받던 고압가스 제조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함
- 2)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탁기 관련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존 가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완화하고, 안전관리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담 완화

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3)

- 1)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원 자격 요건을 현행 일반시설 양성교육이수자에서 고압가스저장시설 양성교육이수자로 변경하는 등 선임 자격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사용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저장능력 기준과 일치하도록 기준을 완화(250
킬로그램 → 500킬로그램)

마. 그 외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판단주체 명확화, 공기충
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에 대한 오류 정정 등 조문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11조의2제2호 중 “제1호라목”을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표 3의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의 제1호의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의 안전관리 책임자 : 1명의 자격구분 중 “이수한”을 “이수한 사람,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으로 하고, 동일한 시설 및 처리능력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중 “안전관리원: 1명 이상”을 “안전관리원(공기를 충전하는 시설,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1명 이상”으로 하며,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의 제2호 시설구분란 중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하고, 같은 호 자격구분란 중 “고압가스자동차”는 “수소연료”로 한다.

같은 표 저장시설의 모든 저장 또는 처리능력에 대해 자격구분란 중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를 “고압가스저장시설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이수자”로 한다.

같은 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저장 또는 처리능력란 중 “250킬로그램”을 “500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시설의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란 중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한다.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를 “수소연료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고압가스저장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하고, 비고 제8호 중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을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비고 제1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산업통상부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 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 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 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생 략)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가. ~ 사.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 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사. (현행과 같음) <u>아.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u>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 ----- ----- 1. (현행과 같음) 2. ----- -----

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u>제1호라목</u> 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 ----- ----- <u>제1호마목</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연 락 처	(044) 203 - 5181